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3.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1.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감사 지적사항 정비 등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정비 개선 과제 등 반영
- 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도로명주소법」 제19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9016(2023. 7. 25.)]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170호
 - 가) 예고기간: 2023. 7. 10. ~ 2023. 7. 31.(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부서 사전협의
 - 가) 기획예산담당관-4328(2023. 3. 22.)
 - 나) 기획예산담당관-5921(2023. 4. 19.)
 - 다) 열린민원과-21248(2023. 5. 25.)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 사업소장”을 “부서장, 직속기관 내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개최 2일”을 “개최일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최 전날”을 “개최일 3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 주사가”를 “담당이”로 한다.

제2조(「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과담당·세입담당·과표관리담당”을 “세정담당·부과담당·세입징수담당”으로 한다.

제6조(「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7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로 한다.

제8조(「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9조(「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0조(「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외로 156번길 36”을 “송학고분로 195”으로 한다.

제11조(「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제12조(「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제2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3조(「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당주사로 한다”를 “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14조(「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축개발과장, 도시교통과장”을 “열린민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법 제72조제1항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와”를 “담당과”로 한다.

제15조(「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6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한다.

제17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18조(「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19조(「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2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20세 이상의 주부”를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부”를 각각 “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

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0조(「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주택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
5.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
7.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

제22조(「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대 방첩관

제23조(「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4조(「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율대리 1029번지”를 “월평로 171”로 한다.

제25조(「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을 “(지역내 자재 및 장비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을 “건설업자가”로 한다.

제26조(「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력육성담당이”를 “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이”로, “인력육성담당자”를 “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7조(「고성군 농업유산 둠병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업유산 둠병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을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을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여성”을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주부민방위기동대 상황별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역할 수행 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 · 재난발생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기타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 1】 <개정 2000.00.00>

여성민방위기동대 상황별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역할 수행 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 · 재난발생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기타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 2】 <개정 2017. 11. 9. 조 2366> <현행>

주부민방위기동대 반별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동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여성민방위기동대 반별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동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관련) <현행>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 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지원자 (서명 또는 인) </div>				
구비서류 제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고성군수 (인) </div>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본청 <u>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 사업소장</u>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부서장, 직속기관 내 부서장</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u>개최 2일 전까지</u>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u>개최 전날까지</u>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개최일 7일</u> ----- -----.</p> <p>③ ----- ----- <u>개최일 3일 전</u>-----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u>담당 주사</u>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p> <p>③ (생략)</p>	<p>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담당이</u>-----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2조(「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4.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p> <p>5. (생략)</p>	<p>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0조제1항----- -----</p> <p>5. (현행과 같음)</p>

제3조(「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 ----- ----- ----- ----- ----- ----- -----</p>

<p>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u>산업건설국장, 문화환경국장</u><타법개정 2022.11.4. 조 27 60></p> <p>2. (생략)</p>	<p>1. ----- -- <u>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u>----- --</p> <p>2. (현행과 같음)</p>
--	---

제4조(「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군수</u>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5조(「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대장비치) <u>부과담당·세입담당·과표관리담당</u>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8조(대장비치) <u>세정담당·부과담당·세입징수담당</u>----- ----- ----- ----- ----- -----.</p>

제6조(「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 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 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 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 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검토) ----- ----- ----- 「고성군 공용차 량 관리 규칙」----- ----- ----- -----.

제7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 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3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 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 식에 따른 -----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산회계) ①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리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회계) ①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고성군 장애인 복지	제3조(위치) -----

<p>조2257>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p>	<p>-----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p>
---	--

제13조(「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u>담당주사로 한다.</u></p>	<p>제8조(간사) ----- ----- ----- <u>담당이 된다.</u></p>

제14조(「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고성군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축개발과장, 도시교통과장</u>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열린 민원과장, 재무과장</u>----- ----- ----- ----- -----.</p>

<p>1.·2. (생략)</p> <p>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법 제72조제1항의</u>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 <u>담 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u></p> <p>③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72조제1항 - ----- --</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u>담당 과</u> -----.</p> <p>③ (현행과 같음)</p>
---	---

제15조(「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p> <p>④ 기금의 출납은 「<u>지방자치단 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따른다.</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지방자치단 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p>

제16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 인 -----.

제17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

제18조(「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 ④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 --.

제19조(「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u>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u>주부민방위기동대</u>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군수는 <u>주부민방위기동대</u>(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군 : 고성군 <u>주부민방위기동대</u></p> <p>제2장 편성 2. 읍·면 : <u>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u> ○○읍·면 지역대</p>	<p><u>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여성민방위기동대</u>----- ----- -----.</p> <p>제2조(설치) ----- <u>여성민방위기동대</u>----- ----- -----.</p> <p>제3조(명칭) ----- -----.</p> <p>1. ----- <u>여성민방위기동대</u></p> <p>제2장 편성 2. 읍·면 : <u>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u> ○○읍·면 지역대</p>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장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제19조(구성) ① 읍·면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편성기준) ① -----

20세 이상의 여성 -----

-----.

1. -----
----- 여성
2. -----
-- 여성
3. -----
----- 여성

② -----
----- 70세-----

-----.

제5장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제19조(구성) ① -----

여성민방위기동대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 3. (생략)</p> <p>4. <u>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u></p> <p>5. <u>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u></p> <p>6. <u>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u></p> <p>7. <u>KT 고성지점장</u></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u></p> <p>5. <u>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u></p> <p>6. <u>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u></p> <p>7. <u>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u></p> <p>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2조(「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 4. (생략)</p> <p>5. <u>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u></p>	<p>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대 방첩관</u></p>

6. ~ 13. (생략) ⑥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제23조(「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24조(「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u>울대리 1029번지</u> 에 둔다.	제3조(위치) ----- ----- ----- ----- <u>월평로 171</u> ----- --.

제25조(「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	제6조(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

<p>용) ① (생략)</p> <p>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u>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건설업자가</u> ----- ----- -----.</p>
--	--

제26조(「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3조(회의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u>인력육성담당</u>이 되고 서기는 <u>인력육성담당자</u>가 된다.</p>	<p>제13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u>이 --- -- <u>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자</u>-- -----.</p>

제27조(「고성군 농업유산 등명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기획감사담당관</u>, 문화관광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기획예산담당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제28조(「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u>여성의</u>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증상을</u> <u>겪고 있는 대상자</u>-----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p> <p>1. “갱년기”란 <u>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u>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 -----.</p> <p>1. ----- <u>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u>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u>여성</u>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 ----- <u>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u>----- -----.</p>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 ③ ~ ⑥ 생략